

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#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 강태원 의원의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리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조례의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“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“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”로 함.

나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리.

- 1)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→ 지방자치법 제16조(안 제1조)
- 2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 →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(안 제1조 및 제2조)
- 3)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→ 지방자치법 제15조(안 제6조)

다.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 정비.

- 1) 위원 자격요건 및 위원장 선출 방법 삭제(현행 조례 제3조)
- 2) 위원회 기능 삭제(현행 조례 제6조)

3) 회의 통지 및 의결 방법 삭제(현행 조례 제8조)

라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」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

- 1) 항 표시(①, ② --)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쓰기로 함.
- 2) “제○조의 규정에 의한/의하여”를 “제○조의 규정에 따른/따라”로 함.
- 3) 그 밖에 일본식 표현(~에 관하여 등), 어려운 용어(통할→총괄 등)의 정비 등

#### 4. 검토의견

강태원의원의 6명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,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리 둘째, 상위법령 개정후 조례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이 기간 동안에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의 삭제 셋째,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법제처의 ‘알기쉬운 법령만들기’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인용조문 변경외에 내용 변동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